W-7.1.2 취약환자 권리보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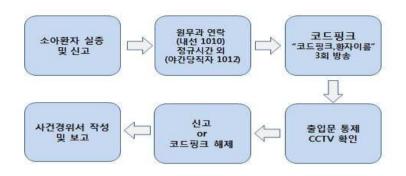
- 취약화자의 정의
 - 1) 신체적, 정신적, 성폭력, 가정폭력, 가혹행위 피해자 및 유기 또는 방임 등의 학대를 받은 아동(18세 이하) 및 노인(65세 이상), 여성등의 환자
 - 2) 유괴가능성이 있는 소아(영유아)환자
 - 3)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(외국인, 청각장애)
- 4)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를 비롯해 여러 이유로 일상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환자

Q: 학대와 폭력피해자를 위한 보고 및 지원체계가 있나요? 있다면 어떻게 운영합니까?

구 분	지원체계	
정규시간 내	윤리위원회간사(원무과장: 내선 1010) 연락하고 간사는 유형에 따라 관련기관에 신고 및 지원체계와 연계한다.	
정규시간 외	관련기관에 직접 연락한다.	
관련기관	아동	보건복지부 콜센터(129)
	노인	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(031-683-1389)
	여성	여성 긴급전화(1366) 경기남부해바라기상담센터(031-215-1117)

Q: 소아(영유아)환자의 유괴를 예방하기 위한 절차가 있나요? 있다면 어떻게 운영되나요?

- 1) 병원 내 게시판에 소아(영유아)유괴 관련 게시물 부착하여 정보제공
- 2) 소아 입원 시 보호자 함께하고 자리 비울 시 간호사실 알림
- 3) 소아 이동 시 보호자가 동반하며, 보호자 부재 시 직원이 함께 동반
- 4) 소아 혼자일 경우 면회 시 보호자와 유선 연락하여 확인 후 가능



환자구분	지원 절차	
외국인	Q: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의 의사소통 절차가 있는가? A: 외국인환자 내원 시 원무과(내선1010)로 연락하여 통역직원을 연결하여 언어 지원. 야간 및 휴일(지원할수 없는 언어 외국인)에는 BBB통역무료서비스(1588-5644)연락	
장애환자 (청각, 구음)	-장애환자 내원 시 접수보조 및 진료실까지 이동을 돕는다윤리위원회 간사(내선1010)에게 연락하고 원무과는 관련기관을 연결한다안양시 농아인협회(031-466-1123) -한국 농아인협회(070-7785-1923) -안양시 시각장애인 협회(031-469-1128)	
장애 환자 편의절차	Q: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위한 지원체계는 어떻게 운영되나 요? A: 장애인용 화장실 운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정 엘리베이터 내 층별 점자블록 버튼 필요시 휠체어 제공 병원 내 장애인 화장실에 비상벨, 안전손잡이 설치 화재 시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기 설치 운영	